



편입학시행 규정

제정일	2020. 8.10
개정일	2022. 6. 1
개정차수	1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기) 편입학은 매년 1학기 시작 전에 모집할 수 있다.

제 3조 (자격)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3학년 편입학의 경우 전적 교에서 이수한 학부(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2학년 편입학(2학년 1학기)

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나.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30학점 이상 취득) (개정 2022. 6. 1)

다.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1학년 이상 수료자(30학점 이상 취득) (개정 2022. 6. 1)

라.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2. 6. 1)

마.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3학년 편입학(3학년 1학기)

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70학점 이상 취득) (개정 2022. 6. 1)

다.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2학년 이상 수료자(70학점 이상 취득) (개정 2022. 6. 1)

라.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중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22. 6. 1)

마.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4조 (모집인원) 각 학부(과)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서 정원내 결원(제적생) 수를 모집인원으로 하며, 정원내 재입학 인원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으로 산출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 5조 (신청과 허가) ① 편입학자 신청방법 및 선발방법은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르고 입학홍보과는 선발방법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사전에 공지한다.

② 편입학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대학의 입학홍보과에서 접수하여 심의한다.

③ 편입학자에 대한 최종선발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며 최종 등록을 위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6조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전적 대학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평점평균이 동점인 경우 평점합계, 취득학점, 백분율 평균점수, 백분율 총점, 성적취득 과목수, 최근 졸업자 순으로 선발

3. 이후 동점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제 7조 (학번부여) 편입학생의 학번 부여는 편입학과의 편입학년 재학생과 동일한 입학연도와 학과코

드를 사용하되 편입학 구분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 8조 (학점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해당학과의 판정에 의하며 졸업학점의 1/2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전공학점은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며, 교양학점은 편입학생의 졸업요건 총학점에서 졸업요건 전공학점을 뺀 학점을 최대 인정학점으로 한다.
②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은 제1항의 모집시기별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전공(선택)으로 각각 인정하며 우리 대학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제 9조 (편입학 후 교과목이수) ① 편입생은 편입학 후 잔여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학 학과의 해당 학년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② 편입학 시 인정받은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재학 중 재이수할 수 없다.
- 제10조 (수업연한)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편입학과 해당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으며 해당 학년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